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506-0553673
신청일	2025-06-15 07:16:40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물류창고(창고시설)내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_재재 질문
내용	국토부를 통해 두 차례 문의를 통한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 해소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추가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첨부 파일	적층식 랙 설치기준에 대한 재재질문_2025.6.15.pdf 하남시 관내 산업용 적층식 랙 (Rack) 설치기준 안내_게시용.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6-0652109
접수일	2025-06-17 10:09:20
담당자(연락처)	전준하 (044-201-4841)
처리예정일	2025-06-2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통지일	2025-06-17 17:01:01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요지 ○ 적층식 랙 설치 시 용도 관련 질의 2. 답변 내용 ○ 물류센터(창고시설) 내에 설치하는 적층식 랙(한국산업규격 종전 KS A 2163, 현행 KS T 2027에 정의된 '산업용 랙'의 일종)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장치)이고, ○ 필요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해체·이전 등이 가능하며, 적층식 랙 자체만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 되는 구조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 이를 상기 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운영(공장 등에 부속되는 창고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따라서, <u>적층식 랙의 경우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장치)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 바, 그 외 타 용도(사람이 상주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로 사용될 경우라면 적층식 랙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u> ○ 질의의 경우, 해당 구조물이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8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	--